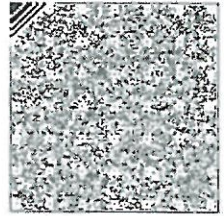




해 양 수 산 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의원(서삼석 위원)발의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

1. 국회 의안 26263(2024.1.11)호(법률개정안 발의) 관련입니다.
2.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위원이 대표 발의한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관계기관 의견을 조회하니, 2024. 1. 26.(금)까지 불임 작성양식으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라며, 해당 기한 내 회신이 없는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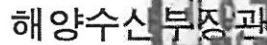
☐ (주요내용 발췌 요약) 해양시설 소유자는 폐수 등 오염물질이 해양으로 유출·누출되지 않도록 아래에서 정하는 시설 전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

* 전체 상세한 내용은 불임 의안원문을 확인

- 다른 해양시설에서 발생하는 폐수와 서로 섞이지 않도록 하는 분리·집수시설
- 폐수 중 해양오염물질을 고체 상태의 폐기물로 처리하는 방지시설
- 해양시설의 고장, 사고 등으로 인한 폐수 유출 및 빗물 등으로 인한 해양배출이 되지 않도록 하는 차단·저류 시설

→ (설치대상 해양시설) 기름 및 유해액체물질 저장시설 선박 건조·수리·해체시설/하역시설(시멘트, 석탄, 광석, 토사 등) / 폐기물 해양배출업자의 폐기물저장시설/오염물질 저장시설 등

- 불임 1. 서삼석 의원 대표발의 의안원문(해양환경관리법). 1부.
2. 검토의견 작성 양식. 1부. 끝.



행정사무관

과장

오행록

시행 해양환경정책과-316

(2024. 1. 16.)

접수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해양수산부

/ <http://www.mof.go.kr>

전화번호 044-200-5283

팩스번호 044-200-5299

/ pilgrim2@korea.kr

/ 비공개(5)